

『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건축법의 일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
(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)
- 사용승인 현장조사·검사자 지정방법
(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을 구미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)
- 현장조사·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조정 - 허가수수료의 50~100%
- 건폐율 및 용적율 조항 삭제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
-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을 2.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조정
-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조정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
: 건축법 제4조, 제23조, 제47조, 제20조, 제83조
: 건축법시행령 제5조, 제20조, 제86조
: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일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수,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,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,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